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3나36605 손해배상(지)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
피고, 피항소인	B
제 1 심 판 결	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2. 선고 2013가소5443508 판결
변 론 종 결	2013. 11. 22.
판 결 선 고	2013. 12. 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"C"라는 인터넷 연예매체를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, 피고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2009. 9. 1.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블로그에 "C"에서 보도한 연예인 사진 3장(이하 '이 사건 각 사진'이라 한다)을 복제,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의 1(블로그), 갑 제1호증의 3(침해물)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는,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의 소속 기자가 촬영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진저작물로서, 피고가 위 각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무단으로 복제,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저작물이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각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,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·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,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, 구도의 설정,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, 카메라 각도의 설정, 셔터의 속도, 셔터찬스의 포착, 기타 촬영방법,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(대법원 2001. 5. 8.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), 저작권법 제7조는 "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"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'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'를 열거하고 있는바,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, 시사보도는 여러

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,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'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'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4도5350 판결 등 참조), 갑 제1호증의 2(침해물)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이 사건 각 사진은 드라마의 제작발표 기자회견이나 화장품, 커피 등 제품의 공개홍보 현장에서 그 출연 배우 또는 광고 모델로 행사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촬영한 것으로서, 촬영 목적 자체가 연예인의 활동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고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사진이라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3나36605 손해배상(지)
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
피고, 피항소인	B
제 1 심 판 결	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2. 선고 2013가소5443508 판결
변 론 종 결	2013. 11. 22.
판 결 선 고	2013. 12. 6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"C"라는 인터넷 연예매체를 운영하는 법인인 사실, 피고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2009. 9. 1.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블로그에 "C"에서 보도한 연예인 사진 3장(이하 '이 사건 각 사진'이라 한다)을 복제,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호증의 1(블로그), 갑 제1호증의 3(침해물)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는, 이 사건 각 사진은 원고의 소속 기자가 촬영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진저작물로서, 피고가 위 각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무단으로 복제,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저작물이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각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,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·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,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, 구도의 설정,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, 카메라 각도의 설정, 셔터의 속도, 셔터찬스의 포착, 기타 촬영방법,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(대법원 2001. 5. 8.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), 저작권법 제7조는 "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"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'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'를 열거하고 있는바,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,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,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'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'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4도5350 판결 등 참조), 갑 제1호증의 2(침해물)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이 사건 각 사진은 드라마의 제작발표 기자회견이나 화장품, 커피 등

제품의 공개홍보 현장에서 그 출연 배우 또는 광고 모델로 행사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촬영한 것으로서, 촬영 목적 자체가 연예인의 활동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고 촬영자의 고려 역시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사진이라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종두

판사 김현정

판사 제갈창